

융합전공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21. 2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3조의 6에 의거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융합전공”이란 융·복합 교육을 위하여 모집단위와는 별개로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가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전공을 말한다.

② “참여학과”란 융합전공 설치에 참여하는 학과(전공)를 말한다.

③ “주관학과”란 참여학과 중 융합전공을 대표하여 전공 운영을 담당하는 학과(전공)를 말한다.

제3조(주관학과 지정) ① 주관학과의 결정 또는 변경은 융합전공 참여학과(전공)들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주관학과에서는 전공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. 단, 참여학과 간 협의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융합전공 설치) ①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 각각 전임교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융합전공 주관학과의 학과장은 주관 및 참여학과 각각의 전임교원 동의와 융합전공교육과정(별지서식 2)을 포함한 융합전공 설치신청서(별지서식 1)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융합전공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원의 교육과정위원회가 융합전공교육과정과 함께 심의한다.

④ 융합전공 설치 신청 시 융합전공으로서의 학생신청 최대인원은 각 참여학과에서 정한다.

⑤ 융합전공은 수업운영계획에 따라 야간수업, 집중수업, 계절학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학생관리)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학적은 원 소속 학적을 유지한다.

②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통계, 장학 등 학사관리는 원 소속학과(전공)에서 관리한다.

③ 융합전공 이수자의 수강 및 졸업사정 관리는 원 소속학과(전공)에서 관리한다.

제6조(교육과정 편성) ① 주관학과에서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설치 신청 시 교육혁신원에 제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졸업학점 및 융합전공의 전공이수학점을 편

성하여야 한다.

③ 융합전공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을 제외하고 36학점 이상으로 편성한다.

④ 주관 및 참여학과(전공)의 전공교과목 중 최대 9학점까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합전공교과목과 동일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7조(이수자격 및 신청) ① 융합전공 이수신청자격은 1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신청 당시 재학 중인 주관 및 참여학과 소속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 단 산업체위탁생, 전공심화과정 및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.

② 융합전공 이수신청은 지정기간에 융합전공이수신청서(별지서식 3)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융합전공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으며, 참여학과 이외 소속의 학생이 융합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선 참여학과 중 한 학과로 전과 한 후 융합전공 이수신청을 해야 한다.

제8조(이수학점) ① 융합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주관학과, 참여학과 소속 재학생에 한하여 이수 가능하며, 융합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고,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융합전공에 참여해 융합전공학위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, 각 학위에 필요한 최소 전공이수학점은 2, 3년제의 경우 원 소속학과(전공) 50학점, 융합전공 36학점으로 하며, 4년제의 경우 원 소속학과(전공) 54학점, 융합전공 36학점으로 한다.

제9조(융합전공 이수 포기) ① 융합전공을 이수 중 포기할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융합전공포기 신청서(별지서식 4)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미 취득한 학점은 원 소속학과(전공)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한다.

제10조(학위수여) ① 융합전공 이수자에게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소속학과의 학위명과 융합전공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

② 융합전공 중도 포기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된 해당학기에 소속학과의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1조(등록금)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의 등록금은 원소속이 속한 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한다.

제12조(증명발급) 융합전공을 이수 완료한 경우 융합전공 이수사실을 표기하여 발급한다.

제13조(융합전공 폐지) ① 융합전공 이수자가 2년간 총 10명 미만일 경우 폐지대상으로 한다.

② 교학처장은 제1항 및 융합전공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합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.

③ 폐지된 융합전공의 폐지 이전 이수 신청자는 원 소속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4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1]

융합전공 설치 신청서			
융합전공 명칭	국문 : 영문 :	참여학과 / 학생신청 최대인원	()학과 / ()명 ()학과 / ()명 ()학과 / ()명
학위명	국문 : 영문 :		
전공개요			
설치목적			
졸업 후 진로		관련 자격증	
주요 교육내용			
수업운영 계획	※ 다양한 형태의 수업운영계획 기재 가능		
<p>상기와 같이 융합전공 설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>☐ 주관학과 : _____ 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서명 : 학과장 (인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소속교수 (인) (인) (인) (인)</p> <p>☐ 참여학과 : _____ 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서명 : 학과장 (인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소속교수 (인) (인) (인) (인)</p> <p>☐ 참여학과 : _____ 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서명 : 학과장 (인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소속교수 (인) (인) (인) (인)</p>			
<p>수원과학대학교 총장 귀하</p>			

[별지서식 2]

()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표

이수구분	교과목명		학년 학기	학점	주당시간		비 고	
	국문	영문			이론	실습		
융합전공								
		소 계						
		합 계						

※ 기존 교과목 활용 시 원 교과목 개설 학과(전공)의 학년/학기과 동일하게 편성

[별지서식 3]

융합전공 이수 신청서

학 과		학 번	
성 명		학년 / 반	
이수희망 융합전공명			
연락처(핸드폰)		이메일	

위와 같이 융합전공 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수원과학대학교 교학처장 귀하

지도교수	소속 학과장	융합전공 주관학과장

결	담당	차장	부처장	교학처장
재				

